

보건용 마스크 수출 관련 안내문

('20. 6. 18.(목), 식약처 마스크 수출지원팀)

○ 수출 가능한 마스크 : 보건용 마스크

※ 수술용마스크 및 비말차단용마스크('20.6.1. 의약외품으로 유형 신설)의 경우 수출 금지

○ 수출자

-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
- 수출을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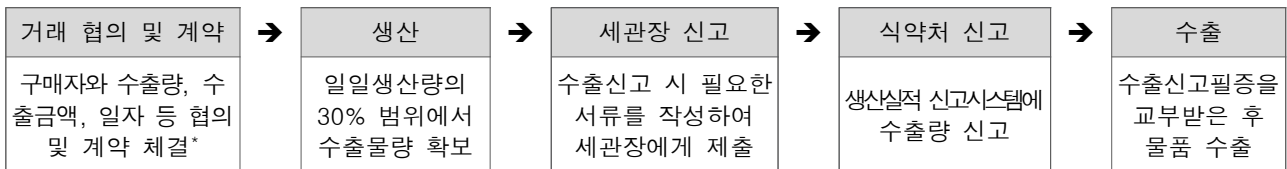
○ 수출 가능 물량 : 당일 생산량의 3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('20.6.18. 생산량부터 적용)

※ 당일 생산량의 30%를 초과하는 물량의 경우 수출 물량이 될 때까지 일일 생산량에서 30%씩 모아야 함
예) 매일 100만장씩 생산하는 업자의 경우 90만장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30만장씩 3일간 모아야 함

○ 수출 가능 국가 : 특별한 제한 규정은 없음

○ 수출 목적 : 제한 없음

○ 수출 절차



* 샘플 반출의 경우 계약 체결 전이라도 해외 구매자의 공문이나 서신 등을 근거로 진행 가능

※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하지만, 생산실적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여야 함

○ 수출신고 시 필요한 서류

- 무역서류(상업송품장, 포장명세서 등)
- 생산업자가 신고한 마스크 생산신고 화면캡처(수출물량에 해당되는 생산일자별 생산량)
- 마스크 생산 및 수출 현황표
- 생산업자와의 계약서(생산업자 이외의 경우)

※ 생산신고 화면 캡처방법, 생산 및 수출현황표 양식과 수출신고서 작성방법 등은 Q&A 참조

○ 문의처 : 식약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 마스크 수출지원팀

(Tel. 043-719-1321, 1329, 1330)